



일본의 자산운용행위 관련법의 고찰(3)

- 상품 투자와 관련되는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신청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I. 서론

동법은 1991년(평성 3년) 5월 2일 법률 제66호로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6년(평성 18년) 6월 14일 법률 제66호이다. 동 법률은 2006년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현재 증권거래법은 2008년(평성 20년) 5월 2일 법률 제28호로 최종 개정되었으므로 동법 또한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4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은 총칙으로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은 상품투자와 관련되는 사업의 규제에 관한 것으로 제3조부터 제37조까지 약3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장은 잡칙(제38조~제45조), 제4장 별칙(제46조~제51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총칙

1. 목적

동 법률은 상품투자 고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 제도의 실시 기타 상품 투자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상품투자와 관련되는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히 함과 더불어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의 규정

동조에서 동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상품투자」, 「상품투자 고문 계약」, 「상품투자 고문업자」, 「상품투자계약」, 「상품투자 수익권」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Ⅲ. 상품투자와 관련되는 사업의 규제

제1절 상품투자 고문업의 규제

1. 허가

(1)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허가

상품투자 고문업은 주무 대신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와 동 종류의 법인으로 국내에 영업소를 가지는 것에 한정)가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제3조). 주무대신은 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것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은 상품 투자와 관련되는 사업의 공정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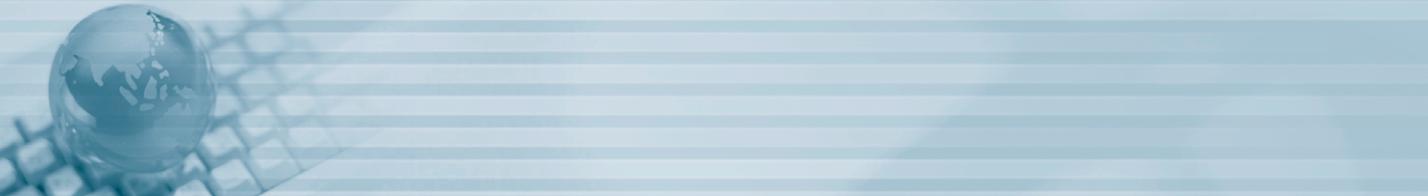
(2) 허가의 신청

상품투자 고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이란 ① 상호 및 주소, ②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및 집행이사)의 성명 및 주소 및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자본금의 액, ⑤ 업무의 종류 및 방법, ⑥ 그 밖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의 종류, ⑦ 기타 주무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나아가, 위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무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

(3) 허가의 기준

주무대신은 위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허가의 기준으로는 ① 허가 신청자가 영위하려고 하는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의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지의 전망이 양호한 것, ② 허가 신청자가 그 인적 구성에 비추어 영위하려고 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을 가지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있을 것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주무대신은 위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란 ① 자본금의 액수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당한 것으로 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닌 자, ②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3조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회사 또는 동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해당 외국에서 받은 동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회사, ③ 동 법률, 금융상품 거래법(1948년 법률 제25호), 상품거래소법, 투자신탁 및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198호), 출자의 수용, 예탁금 및 금리 등 단속에 관한 법률(1954년 법률 제195호), 해외 상품 시장에 있어서의 선물 거래의 수탁 등에 관한 법률(1981년 법률 제65호),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 계약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2호) 또는 신탁업법(2004년 법률 제154호) 또는 이것들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의해 벌금의 형(이것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형을 포함)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회사 ④ 이사, 회계 참여, 감사 혹은 집행이사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에 다음의 하나¹⁾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 ⑤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회사로 이러한 자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제6조).

(4) 허가의 유효기간

위 제3조의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의 날로부터 기산해 6년으로 한다(제7조). 이러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당 허가 와 관련된 상품투자 고문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제8조).



1)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외국의 법령상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자로 과산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되지 않는 자 Ehss 외국의 법령상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끝마쳤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③ 전호에 규정한 법률 혹은 이것들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형법 제204조, 제206조, 제208조, 제208조의 3, 제222조 혹은 제247조의 범죄 혹은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대정 15년 법률 제610호)의 죄를 범해, 벌금의 형(이것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형을 포함)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④ 상품투자고문업자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3조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투자고문업자의 이사, 회계 참여, 감사, 집행이사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인 자로서 해당 취소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 ⑤ 동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해당 외국에서 받은 동종의 허가 등이 삭제되어 그 취소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해당 허가 등이 취소된 법인의 해당 취소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인 자로 해당 취소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5) 기타

이 외 변경의 인가(제9조), 변경의 신고(제10조), 폐업의 신고 등(제11조), 수수료(제12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업무

(1) 표지의 게시

상품투자 고문업자는 영업소 마다 공중의 열람이 용이한 곳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상품투자 고문업자 이외의 자는 위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제13조).

(2) 명의대여의 금지

상품투자 고문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상품투자 고문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14조).

(3) 부당한 권유 등의 금지

상품투자 고문업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은, 다음에 게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기재한 행위란 ① 고객에 대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시킬 정도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상품 투자고문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권유하는 것, ② 고객에 대해,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이익을 보증하여 상품투자 고문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권유하는 것, ③ 전2호에 기재하는 것 이외 상품투자 고문업에 관한 행위로서, 투자자의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서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7조).

(4) 상품투자 고문 계약의 체결 전후의 서면 교부

상품투자 고문업자는, 상품 투자고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고객에 대해, 해당 상품 투자고문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 투자고문 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품투자 고문 계약과 관련되는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제18조).

또한 상품 투자고문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고객에 대해, 지체 없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품 투자고문 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다음에 기재한 사항이란 ① 투자 판단의 일임의 범위 및 투자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보수의 액수 및 지불의 시기, ③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④ 손해배상액수의 예정(위약금 포함)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 ⑤

전 각 호에 기재된 것 이외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9조).

그 밖에도 고객에 대한 서면 교부의무는 상품 투자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즉, 상품투자 고문업자는, 상품 투자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다음에 기재한 사항이란 ① 해당 상품 투자고문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상품 투자와 관련되는 거래 중 해당 고객으로부터 일임되어 투자를 실시한 것과 동일한 특정 상품, 특정 상품 지수, 특정 물품 또는 지정 물품에 대해 거래를 실시한 사실의 유무, ② 전호의 경우에 대해 거래를 실시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매매의 구별(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선물거래(특정 상품과 관련되는 상품거래소법 제2조 제8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래 제외) 또는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2호에 기재된 것 이외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1조).

(5) 서류의 열람 등

상품투자 고문업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영업소마다 비치하게 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또한 상품투자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고객은 해당 상품 투자고문 계



약과 관련되는 상품 투자고문업자에 대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품 투자고문계약과 관련되는 해당 고객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상품투자 고문업자는 그 청구가 ① 자기의 권리 확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② 해당 상품 투자고문업자의 업무의 운영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제24조).

(6) 충실의무

상품투자 고문업자는 법령의 규정 및 상품 투자고문 계약의 본지에 따라 고객을 위해 충실히 상품투자 고문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7조).

(7) 기타

이 외에도 광고 등의 규제(제15조), 상품투자고문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에 대한 권유 등(제16조), 보고서의 교부(제20조),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제22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예탁의 수용 등의 금지(제25조), 금전 등의 대부 또는 그 매개 등의 금지(제26조), 금지행위(제28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감독

(1)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상품투자 고문업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제29조).

(2) 보고 및 출입 검사

주무대신은,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품투자 고문업자 또는 이것과 거래하는 자에 대해 보고를 시키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영업소에 들어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시킬 수가 있다. 위의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한과는 구별하여야 한다(제30조).

(3) 업무개선 명령

주무대신은,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상품투자 관련 사업의 공정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상품투자와 관련되는 사업의 공정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상품투자 고문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외 업무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1조).

(4) 허가의 취소 등

주무대신은 상품투자 고문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3조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란 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②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3조의 허가 또는 제8조 제1항의 유효기

간의 갱신을 받았을 때, ③ 동 법률 또는 동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이것들에 근거하는 처분 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에 교부한 조건에 위반했을 때, ④ 상품투자 고문업에 관계되어, 부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울 때를 말한다. 주무대신은 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제32조).

제2절 그 외의 상품 투자와 관련되는 사업의 규제

1. 상품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제한

상품투자계약의 체결 또는 그 대리 혹은 매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상품투자 고문업자 이외의 유사한 업을 하는 자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하여 상품투자자와 관련되는 투자 판단을 일임하는 상품투자계약이 아니면 그 체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상품 거래법 제29조²⁾의 등록을 받아 투자 운용업을 행하는 자의 운용 재산의 운용상 발생하는 여유금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상품투자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투자계약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제33조 제1항).

또한 상품투자 수익권의 판매 또는 그 대리 혹은 매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상품투자 고문업자

등에 대해서 상품투자와 관련되는 투자 판단을 일임 하는 계약과 관련되는 상품투자 수익권이 아니면, 그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탁회사 또는 신탁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위탁자 또는 위탁자로부터 지시의 권한의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실시하는 상품투자와 관련되는 상품투자 수익권 및 투자 운용업을 실시하는 자의 운용 재산의 운용상 발생하는 여유금 기타 이것에 유사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상품 투자에 의해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관련되는 상품 투자 수익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제33조 제2항).

2. 재산의 분별 관리

상품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출자된 재산을 관리하는 자(상품 투자계약의 체결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에 한정)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을 자기 고유 재산 및 다른 상품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출자된 재산과 분별해 관리해야 한다(제34조).

3. 지시

주무대신은 상품 투자계약의 체결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33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또는 상품투자 수익권의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했



2) 금융상품거래법 제29조는 “금융상품거래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경우에, 상품투자자나 관련된 사업의 공정 또는 투자자의 이익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품투자계약의 체결 등 또는 상품투자 수익권의 판매 등을 업으로 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35조).

4. 업무의 정지 등

주무대신은 상품투자 판매업자가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 대하여 상품투자자와 관련되는 사업의 공정 혹은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상품투자 판매업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해당 상품투자 판매업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주무대신은 위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제36조).

5. 준용 규정

제30조의 규정은 상품투자 판매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제37조).

IV. 잡 칙

1. 허가의 취소 등에 수반하는 업무의 종료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3조의 허가가 효력을 잃었을 때 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3조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허가와 관련되는 상품투자 고문업자인 자 또는

그 일반 승계인은 해당 상품투자 고문업자가 체결한 상품 투자고문계약에 근거한 업무를 종료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상품투자 고문업자로 간주한다(제38조).

2. 외국법인에 대한 동 법률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적 독체(讀替) 등

상품투자 고문업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 해당 상품 투자고문업자에 대한 동 법률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기술적 독체 그밖의 동 법률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제39조).

3. 기타

그밖에도 잡칙에서는 상품 투자고문업의 규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제40조), 해외상품시장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수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제41조), 주무대신 등(제42조), 재무대신에 대한 자료 제출 등(제43조), 주무성령에 대한 위임(제44조), 경과조치(제45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V. 기타

제4장 벌칙 이외 잡칙의 규정이 있다.

고 재 종

(선문대 법대 교수)